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4. 9. 25 선고 2024가단204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9. 25.

주 문

- 이 사건 소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주식회사 D 발행주식 10,000주에 관하여 2024. 2. 6.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1) 및 주식회사 D 발행주식 10,000주에 관하여 피고는 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과 원고 사이에 2013. 10. 31. C이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0.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차용증에 기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가합7159), 위 법원은 2024. 2. 15. 위 차용증에 기하여 C이 원고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C은 원고에게 178,725,6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C 등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24나691].

다. C은 2024. 2. 6. 피고에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및 경영권을 150,000,000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D의 우리은행 계좌에 2024. 2. 6. 100,000,000원, 2024. 2. 14. 5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24. 2. 7.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로 무자력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는 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고, 주식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인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주식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을 전제로 원상회복청구로 피고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본래의 주식

소유자인 C은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여 D을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로서도 C을 대위하여 D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사해의사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364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부터 C에 대하여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C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로 D의 경영권 및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C의 당시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C은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한 층 더 부족하게 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채무자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이 부도 직적인 상황에서 피고가 D을 인수하고, C이 D에 소속되어 화물운송을 하는 것이 C의 채무 변제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C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D

주식 매매대금을 C이 아닌 D에 지급하여 D의 운반비 지급에 사용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C은 그 소유 재산인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이 환가된 매매대금조차 받지 못하였으므로 C의 개인채권자로서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게 된 것인 점(C이 D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② C과 D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D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 변제력을 갖게 하는 행위가 채무자 C 개인에게도 채무 변제력을 갖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C이 D에서 운송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채무자 C이 다른 개인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이 C의 개인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C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스스로도 C이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에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면서 D을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가량에 양도하려고 시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선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희

1) 청구취지에는 주식양도계약일이 2024. 2. 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4. 2. 6.의 오키로

보이므로 주문에는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하였다.